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(수정-미얀마 發 추가)

1. 관련

- 가.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제65차('21.10.28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('21.10.29.)
- 다. 중앙방역대책본부-22720('21.10.29.)호

2.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의 일환으로 '21.11.1.부터 격리기간이 단축 시행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(시설, 자가)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우리국민·재외공관 및 보건소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○ (대상) 해외입국자(시설, 자가)

○ (격리기간)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(시설, 자가)

- 해외입국자 중 시설7일+자가7일 격리자는 시설5일+자가5일 격리
- * 남아공·탄자니아·칠레·페루, 미얀마 發 입국자,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
-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

○ (격리 해제전 검사의무) 격리 9일차에 전수* PCR 검사

- * 종전 시설7일+자가7일 격리자 대상 실시하던 시설 퇴소전 검사(5~6일차)는 생략 → 입국 1일차 검사(시설), 9일차 격리해제전 검사(보건소)만 실시

○ (격리 해제) 해제전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,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(11일차 12시)에 해제

- 단, 국내 숙소 확보가 어려워 시설 체류를 희망하는 시설격리자(단기체류 외국인 등)는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허용(2주간 유예, '21.11.14.까지)
- ☞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(해제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*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)

* (예) 10일차 18시 검사하여 11일차 16시에 음성 확인 → 11일차 16시에 격리해제

○ (시행) '21.11.1.(월) 해외입국자부터

- 단,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(11일차 12시)에 퇴소 가능

* 시설7일+자가7일 격리자 중,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전환조치(퇴소전 검사 생략). 끝.

중앙방역대책본부장



수신자 모든기관, 시도 및 권역센터

보건연구관 이육교 격리관리팀장 민선녀 전결 2021. 10. 29.

협조자

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-22742 접수 국제항공과-8468 (2021. 10. 29.)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질병관리청 중 / http://www.kdca.go.kr
양방역대책본부

전화번호 043-719-9337 팩스번호 043-719-9469 / twinleo@cdc.go.kr / 대국민 공개

질병정보 공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